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1. 7. 6 선고 2021가단50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1. 6. 8.

판 결 선 고 2021. 7. 6.

주 문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 중 35/100 지분에 관하여 2020. 5.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5/100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20. 5. 28. 접수 제2291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D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 등으로부터 금원을 대출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2015. 4. 30.경 전주지방법원 2015개회10612호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결정을 받았으나, 변제계획에 의한 변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2018. 11. 13. 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는 E로부터 D에 대한 채권을 2015년경에 양수받아 이를 통지하였고, D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자 D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소292963호로 양수금 청구를 하여 위 법원은 2019. 6. 13. 'D는 원고에게 3,697,441원 및 그 중 1,972,592원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여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망 F의 소유였는데, 1987. 11. 18. D는 이 사건 부동산 중 35/100 지분에 관하여 상속을 받아 2020. 5. 20. 등기를 마쳤고, 그 직후 누나인 피고에게 자신의 지분에 관하여 2020. 5. 27.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2020년 공시지가는 9,900,6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양수금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또한 D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케 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경 D에게 7,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이를 돌려받지 못하여 대여금 일부인 3,500,000원(이 사건 부동산의 공시지가에서 D 상속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대물변제받기로 하고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일 뿐이어서 자신은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D에게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D에게 돈을 대여하였다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는 D의 누나인 점, D는 2018년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을 만큼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았던 점, D는 상속등기를 마친 직후 자신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를 선의의 수익자로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진희

별 지 목 록

1. 전라북도 익산시
대 569㎡

